

1. 개정이유

2022년 3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신통상질서실 및 그 소속 한시정원과 2022년 4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샌드박스팀 및 그 소속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항 및 변화한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내 업무분장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새로운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변화한 업무여건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통상질서전략실과 한시정원 21명(고위급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별표 6)

나. 규제샌드박스팀과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 (제42조 제3항 및 별표 7)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

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환경과의 사업명칭 변경 및 소관사무 추가 (제8조제9항)

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현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개발과의 소관 사무 신설 (제9조제8항)

마.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및 전력계통혁신과의 소관 사무 구체화 (제10조 제14항 및 제15항)

바. 국가기술표준원 내 일부 사무의 업무 범위 및 내용 현행화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의 조정 (별표 3의2, 별표 4의2)

1)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명(5급 24명, 6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6명(5급 3명, 연구관 3명) 및 전기위원회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인원의 직급 및 정원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39명(6급 24명, 7급 14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 국가기술표준원 9명(6급 4명, 7급 1명, 연구사 4명) 및 전기위원회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복원함.

2) 변화한 행정수요 및 업무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6급 24명, 7급 16명, 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4명, 6급 16명, 7급 4명)하

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연구관 3명)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0호 중 “녹색경영 컨설팅, 청정생산 컨설팅”을 “청정컨설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산업 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산업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 28.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시책 수립·시행
- 29.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9조제8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 24. 산업분야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 25. 산업기술개발의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제10조제14항제17호 중 “산업”을 “충전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중전의 제5호) 중 “및 국가 간 송전·변전·배전시설”을 “송전·변전·배전설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축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변전·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송전·변전설비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6.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력수급 관리(송전·변전·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9. 정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20. 송전·변전·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전기사업법」(송전·변전·배전설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변전설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개선
22.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23.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송전·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송전·변전설비의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송전·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전력계통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6항제27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를 “한국광해광업공단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7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8.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 수립·총괄·조정
29.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총괄 운용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나노·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를 “전기·전자·정보기술 산업 표준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를 “정보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3호 각 목과”를 “제3항제19호 각 목 및 제30호와”로 하며, 같은 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사물인터넷 관련 응용기술

제18조제7항제1호 중 “주력산업 등의”를 “일반기계·산업기계·기계부품, 자동차·조선·항공, 로봇, 에너지기기, 철강·비철금속 등 기계융합 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을 “기계융합 산업 육성대책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을 “건설 인프라 구축및”으로, “기술지원”을 “표준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5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을 “유통물류관리 등 유통·물류기술”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연소응용기기·압력용기”를 “에너지기기·연소응용기기·압력용기”로, “냉동공조기기”를 “냉동공조기기 기술”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관한”을 “관한 분석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동차·조선·조선기자재·항공·해양구조물 등 수송분야에
관한 기술

나. 일반기계·산업기계·광학기기 등 기계기술, 기계제도·기계안전·기계진동 등 기계일반 기술

다. 로봇·자동화기기 기술

라.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및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산업에
관한 기술

마. 공구, 금속류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용접재료, 기계부품 및 요소기술

사. 건설분야 설계·치수, 건축·토목재료의 시험방법 및 건축환경
기술

아. 철강·비철 등 금속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5.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제18조제7항제6호(중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3호 각 목과”를 “제3항제19호 각 목 및 제30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 지열”을 “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해양에너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3호 각 목과”를 “제3항제19호 각 목 및 제30호와”로 한다.

2. 서비스산업(경영시스템, 고령자 · 장애인 복지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바이오화학서비스산업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 추진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비자정책
심의회 등 제품안전”을 “제품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전
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정, 전기용
품 및 승강기의”를 “지정 및 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
기용품 · 승강기”를 “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용품
기술위원회”를 “전기용품전문위원회”로 한다.

4.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및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연구 · 개선”을 “운영,
연구 ·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
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인증제도 총괄 · 조정

17.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 분석 및 연구

18.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
19.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자격인증제도 운영
20.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21.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관리
22.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관리,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인정·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을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제도 정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2.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평가 및 공인기관 관리
3.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5.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인력 양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IAF, APAC 등)와의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
10.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

제21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업에 대한 인증정보 제공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술규제 정책·대응 업무”를 “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를 “무역기술장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이행”을 “이행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을 각각 “무역기술장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4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대응

제21조의2제4항제6호 중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을 “자유무역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검토 및”을 “검토와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을 “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활용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11.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12.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전파 및 정착
1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2조제3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30”을 “931”로 하고, 일반직 계 “919”를 “920”으로 하며, 행정주사 “20”을 “21”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0”을 “181”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7”을 “4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5”를 “2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1”을 각각 “224”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3”을 “42”로 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8”을 “5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을 “2”로 하며,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8”을 “29”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8”을 각각 “9”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6 2.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별표 7 중 2.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명,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6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

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학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6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분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
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⑧ (생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녹색경영 컨설팅, 청정생산 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u>	10. <u>청정컨설팅</u> ----- ----- ----- -----
11. ~ 15. (생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u>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u>	16. <u>생태산업단지의 지정·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u>
17. ~ 24. (생략)	17. ~ 24. (현행과 같음)
25. <u>산업 부문 녹색성장 정책 추진 총괄</u>	25. <u>산업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u> ---
<u><신 설></u>	26. <u>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7. <u>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u>
<u><신 설></u>	28. <u>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시책 수립·시행</u>
<u><신 설></u>	29. <u>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u>

⑩ ~ ⑰ (생 략) 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 ⑦ (생 략) ⑧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22. (현행과 같음) <u>23.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u> <u>24. 산업분야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u> <u>25. 산업기술개발의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u>
⑨ ~ ⑰ (생 략) 제10조(에너지산업실) ① ~ ⑬ (생 략) ⑭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전기차 <u>산업</u>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18. ~ 22. (생 략) ⑮ 전력계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전력계통 관련 정책의 수립</u>	⑨ ~ ⑰ (현행과 같음) 제10조(에너지산업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u>충전산업</u> ----- ----- 18. ~ 22. (현행과 같음) ⑮ ----- -----. <u>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u>

<u>· 시행</u>	<u>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2. <u>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u>	2. <u>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3. <u>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및 재생에너지 송전·변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u>	3. <u>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신 설>	4. <u>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변전·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u>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5. <u>남북 간 및 국가 간 송전·변전·배전시설 협력에 관한 사항</u>	24. ---- <u>송전·변전·배전설비</u> ----- --
6. (생략)	12.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13. <u>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u>
<신 설>	14. <u>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u>
<신 설>	15. <u>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6.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전력수급 관리(송전·변전·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정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송전·변전·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전기사업법」(송전·변전·배전설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변전설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개선</u>
<u><신 설></u>	<u>22.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3.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7.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u> <u>8.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 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9.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⑬ ~ ⑮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 ⑤ (생 략) ⑥ 석탄광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27. <u>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u> 28. ~ 35. (생 략) 제17조(지원총괄과) ① (생 략)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u>7. 송전·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u> <u>8. 송전·변전설비의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u> 9. <u>송전·변전설비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u>송전·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u> <u>25. 전력계통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u> ⑬ ~ ⑮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26. (현행과 같음) 27. <u>한국광해광업공단과</u>----- ----- 28. ~ 3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총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분장한다.

1. ~ 2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7. (생략)

제18조(표준정책국) ①·② (생략)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
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10. 삭제

11. ~ 37. (생략)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

-----.

1. ~ 26. (현행과 같음)

27.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
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8.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
수립·총괄·조정

29.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
항

30. 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1. (현행 제27호와 같음)

제18조(표준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11. ~ 37. (현행과 같음)

⑤ -----
-----.

1. ----- 따른 산업

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2. ~ 20. (생략)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나노·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u>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 4. (생략) 5. <u>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u> 6. ~ 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u>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u> 가. ~ 허. (생략) <u>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u> 노.·도. (생략)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주력산업 등의 표준분야</u>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u>표준심의회 총괄 운용과</u> ----- ----- 2. ~ 20. (현행과 같음) ⑥ ----- -----. 1. <u>전기·전자·정보기술 산업 표준분야</u>----- ----- ----- 2. ~ 4. (현행과 같음) 5. <u>정보기술위원회</u>----- ----- -- 6. ~ 8. (현행과 같음) 9. ----- ----- <u>제3항제19호 각 목 및 제30호와</u> ----- 가. ~ 허. (현행과 같음) <u>고. 사물인터넷 관련 응용기술</u> 노.·도. (현행과 같음) ⑦ ----- -----. 1. <u>일반기계·산업기계·기계부품, 자동차·조선·항공, 로봇, 에너지기기, 철강·비철금속 등 기</u>
---	---

	<u>계융합 산업</u> -----
	--
2. <u>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u>	2. <u>기계융합 산업 육성대책의</u> - -----
3. <u>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토목재료 기술지원</u>	3. <u>건설 인프라 구축및</u> ----- -----
4. (생 략) <u><신 설></u>	<u>표준화 지원</u>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u>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u>	5. <u>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u>
가. <u>기계제도, 기계안전, 기계진동 기술 등 기계 일반</u>	6. ----- ----- <u>제3항제19호 각 목 및 제30호와</u> -----
나. <u>일반기계, 산업기계, 공구, 광학기기, 로봇·자동화기기 및 기술·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u>	가. <u>자동차·조선·조선기자재·항공·해양구조물 등 수송 분야에 관한 기술</u>
다. <u>건설분야 설계, 치수, 용어 및 시험방법</u>	나. <u>일반기계·산업기계·광학기기 등 기계기술, 기계제도·기계안전·기계진동 등 기계일반 기술</u>
라. <u>건설 구조물의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토목재료</u>	다. <u>로봇·자동화기기 기술</u>
마. <u>수송기계 및 그 기술, 조</u>	라. <u>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및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산업에 관한 기술</u>
	마. <u>공구, 금속류 배관기자재</u>

<u>선 · 조선기자재 · 해양구 조물 · 해양기기 및 설비</u> 바. <u>물류기계 · 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u> 사. <u>철강 · 비철 등 금속소재, 산업용 신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 기술</u> 아. <u>기계요소부품, 배관기자 재 설비부품 및 소재의 신 뢰성 · 내후성 · 부식 · 방 식 · 방청 등에 관한 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u> 자. <u>연소응용기기 · 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u> 차. <u>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기술</u>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u>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의</u>	<u>설비부품,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용접재료, 기계부 품 및 요소기술</u> 바. ----- <u>유통물류관리 등 유통·물 류기술</u> 사. <u>건설분야 설계·치수, 건 축·토목재료의 시험방법 및 건축환경 기술</u> 아. <u>철강 · 비철 등 금속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u> 자. <u>에너지기기 · 연소응용기 기 · 압력용기 ----- ----- 냉동공조기기 기 술</u> 차. ----- <u>관한 분석 및 ----- ---</u> ⑧ ----- -----. 1. (현행과 같음) 2. <u>서비스산업(경영시스템, 고령</u>
---	---

<u>관리 · 운영 · 보급</u> 3. · 4. (생 략) <u><신 설></u>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u>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 지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 · 재생에너지”라 한다) 설비 · 제품 및 기술</u> 나. ~ 라. (생 략) 마. <u>석탄 · 연탄 제품 및 석탄 가스화 등 이용기술</u> 바. ~ 터. (생 략) 제19조(제품안전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제품안전에 관한 제도의 연</u>	<u>자·장애인 복지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3. · 4. (현행과 같음)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u>바 이오화학서비스산업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 추진</u> 6. ----- ----- 제3항제19호 각 목 및 제30호와 ----- 가. <u>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해양에너지</u> -----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u><삭 제></u> 바. ~ 터. (현행과 같음) 제19조(제품안전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품안전분야 유공자 및 단</u>
---	--

구 · 개선

5. ~ 8. (생략)

9. ~ 11. 삭제

12.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 · 시민단체 ·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 18. (생략)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삭제

4. · 5. (생략)

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7. ~ 14. (생략)

⑤ (생략)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전기용품 및 승강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 · 승강기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체 포상에 관한 사항

5. ~ 8. (현행과 같음)

12. 제품안전 -----

13. ~ 18. (현행과 같음)

④ -----
-----.

4. · 5. (현행과 같음)

6. -----
-- 자문위원회 --

7. ~ 1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지정 및 전기용품 ----

5. 전기용품-----

6. ~ 9. (현행과 같음)

10. <u>전기용품기술위원회</u>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u>전기용품전문위원회</u> ----- -----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 ② (생략)	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IEC CAB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u>	<삭제>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9.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 -- <u>운영, 연구·개선</u>
10. 삭제	
11. ~ 15. (생략)	11. ~ 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u>국가인증제도 총괄·조정</u>
<신설>	17. <u>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u>
<신설>	18. <u>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u>
<신설>	19. <u>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자격 인증제도 운영</u>
<신설>	20. <u>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u>

<신 설>

<신 설>

16. (생 략)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 분야 인정제도 운영

2. 적합성평가 기관의 평가·관리

3.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관리,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 적합성평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APLAC, IAF, PAC

조사,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21.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관리

22.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지원

23.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
-----.

1.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제도 정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2.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평가 및 공인기관 관리

3.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4. -----
----- 인정·관리

5.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인력 양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기준 --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IAF, A

<u>등)와의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u> 8. <u>한국인정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u>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국가인증제도 총괄·조정</u> 2. <u>인증제도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u> 3. <u>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관련 자격인증제도 운영</u> 4. (생략) 5. <u>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u> 6. 삭제 7. <u>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u> 8. <u>시험연구장비 도입 및 개발 지원</u> 9. <u>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u>	<u>PAC 등)와의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u> <u><삭제></u> 9. (현행과 같음) 10. <u>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⑤ ----- -----. <u><삭제></u> 2. <u>기업에 대한 인증정보 제공</u> <u><삭제></u> 4.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	---

10. 삭 제	
11. ~ 21. (생 략)	11. ~ 21. (현행과 같음)
22. <u>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삭 제></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 업무의 총괄·조정</u>	1. ----- <u>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u> -----
2.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u>	2. <u>무역기술장벽</u>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8. ----- ----- <u>이행 총괄</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u>	11. <u>무역기술장벽</u> ----- ----- -----
12.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전문가</u>	12. <u>무역기술장벽</u> ----- -----

의견수렴

13. (생략)

<신설>

14. (생략)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5의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 ·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7. ~ 9. (생략)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평가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8. 삭제

9.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13. (현행과 같음)

1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대응

6. 자유무역협정-----

--

7. ~ 9.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9. -----

<u>검토 및 관련 정부부처·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u>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u> <u>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u> <u>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u> <u>협력에 관한 사항</u> 5.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u> <u>기술규제 관련 업체·유관기</u> <u>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u> 6. <u>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u> <u>수립·총괄·조정</u> 7. (생 략) 8. <u>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정보</u> <u>화 교육</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검토와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u> <u>점검</u> ----- ⑥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u>소관</u> ----- ----- ----- <u><삭 제></u>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u>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u> <u>정보의 활용 및 대외 협력에</u> <u>관한 사항</u> 10. <u>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u> <u>련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u> 11. <u>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u> <u>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u> <u>대응</u> 12. <u>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대</u>
--	--

<u><신 설></u> 제42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생 략) ③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4월 30일까지</u>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④ ~ ⑥ (생 략)	<u>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전파 및 정착</u> <u>1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제42조(한시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2022년 8월 31일</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930</u>		<u>931</u>	+1	
·			·		·		
·			·		·		
일반직	계		<u>919</u>		<u>920</u>	+1	
·			·		·		
·			·		·		
행정주사			<u>20</u>		<u>21</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 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 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 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 ·	<u>180</u>	<u>181</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u>47</u>	<u>49</u>	+2

·	·	·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25</u>	<u>22</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6</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221</u>	<u>224</u>	+3
일반직 계	<u>221</u>	<u>224</u>	+3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 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43</u>	<u>42</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 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48</u>	<u>50</u>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1</u>	<u>2</u>	+1
·	·	·	
·	·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 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28</u>	<u>29</u>	+1
·	·	·	
·	·	·	
총계	<u>8</u>	<u>9</u>	+1
일반직 계	<u>8</u>	<u>9</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u>	<u>3</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u>	<u>3</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4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5제3항 및 제41조의6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2.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	• • <u>2. 신통상 질서전략 실(존속기 한: 2022 년 3월 31 일)</u> • •	• • <u>2. 신통상 질서전략 실(존속 기한: 202 2년 12월 31일)</u> • •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2.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2년 8월 31일) • •	• • <u>2. 제42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2년 4월 30일)</u> • •	• • <u>2. 제42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2년 8월 31일)</u> • •	